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5월 15일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종전 제7조(채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제정되는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